제출부서 : 도시계획과

영종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11.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안이유

2017년 2월 성장관리계획 최초수립 이후 2019년 12월, 2023년 5월 변경 고시 된 「영종구 성장관리계획」의 운영 시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 개요

○ 위치: 영종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 면적: 21.045㎢

(영종지역 9.79㎢, 용유·무의지역 11.24㎢, 예단포항·삼목항 0.018㎢)

○ 명칭: 영종구 성장관리계획(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

나. 주요 변경내용

○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창고, 옥외골프연습장)

- 주거형 :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제한적 입지 허용(입지 허용지역 설정)
- 관광휴양형 : 불허용도 유지
- 관리유도형 : 제한적 입지 허용(입지 허용지역 설정)

○ 창고 및 옥외골프연습장 진입도로 확보방안 신설

- 창고 및 옥외골프연습장 : 진입도로 12m 이상의 폭원 확보
- 창고 : 진입도로는 대형차 기준 12m 이상의 회전반경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나. 참고자료

○ 영종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요약서

○ 주민공람, 관련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